#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83

제출일자 : 2025. 3. 28.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 1. 제안이유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인용법령을 수정하고 상위법령과 위반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등 법령 불부합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부터 제11조)

- 나. 인용법령 오탈자 정비(안 제12조 및 제13조)
- 다. 상위법령 위반 조항 정비(안 제14조)
- 라. 정비대상 목록

연번	구분	조례명	조항	개정내용	소관부서
	유형	인터넷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1			제2조	・「전자정부법」제9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소통담당관
	7		제9조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제2항	
2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행정지원과

연번	구분	조례명	조항	개정내용	소관부서
3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	• 제2조제1호 → 제2조제2호	자치행정과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 「지방자치법」제116조,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80조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78조	기획예산과
5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ul> <li>「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 →「행정절차법」제52조의2</li> </ul>	기획예산과
6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	・ 법 제25조 → 법 제36조의3 ・ 시행령 제14조 → 시행령 제21조의2	기획예산과
7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지역경제과
8	유형 ⑦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재 무 과
9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ul> <li>「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li> <li>「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연금수급자 및 노인시설이용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이용자</li> <li>「한부모가족 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li> <li>「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li> <li>「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li> <li>→「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li> </ul>	복지정책과
10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1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문화체육과
11		보건소 수가 조례	제1조 제2조 별표	<ul> <li>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명시</li> <li>→「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li> </ul>	보건정책과
12	유형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 법 제2조제2항 → 법 제2조제2호	민원감사담당관
13	4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9조	· 영 제2조제3항 → 영 제4조제3항	자치행정과
14	유형 ©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 상위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 내용 명시 →「지방공기업법」제60조제1항	기획예산과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기관: 조례 소관부서와 합의
- 라. 기 타
  - 1) 신 · 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 2) 입법예고: 생략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 4) 규제사전심사: 규제사무 없음(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별도시행(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시행(가족정책과)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5호 중"「전자정부법」 제9조"를 "제12조의2"로 한다.

제9조제1항 중"「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을"「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

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1호"를 "제2조제2호"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16조,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80조"를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78조"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 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를 "「행정절차법」 제52조의2"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법 제25조"를 "법 제36조의3"으로, "제14조"를 "제21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를 "법 제36조의3 및 시행령 제21조의2"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한부모가족 지원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로 한다.

4.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 제10조(「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

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지방자치 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25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수료"를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로한다.

별표 제1호다목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
- 2)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 수수료는 '다'항에 '마'항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 제2조제2항"을 "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영 제2조제3항"을 "영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5조제4항 전단 중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를 "법 제6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	제1조(목적)
시 금천구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u>「전자정부법」</u> 에 따른 전자민	
원 접수·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	제2조(정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전자민원"이란 「민원 처리	5
에 관한 법률」 제2조, <u>「전자</u>	<u>제12</u> 조
정부법」 제9조 및 서울특별	의2
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 중 홈	
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하는 민원을 말한다.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제9조(전자민원창구 설치 운영)	제9조(전자민원창구 설치 운영)
① 구청장은 방문에 의하지 아	1 1
니하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	

록 <u>「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u> 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_
제12	2조의2>	제2항		
<b>②</b>	~ (1) (	혀 해 과	간으)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
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	용)
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영을	
준용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4
"_「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u>및 별표 1"</u> 의 경우: "「서울특	제4조 및 별표"
별시 금천구 공용차량 관리규	
칙」 제4조 및 별표 1"로 봄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	1

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3. (생 략)

<u>제2조제2호</u>
2.・3. (현행과 같음)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u>	제1조(목적) <u>「지방자</u>
<u> 치법」제116조, 제116조의2 및</u>	<u> 치법」 제129조, 제130조 및 같</u>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80조	<u>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78조</u>
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구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	
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	
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민원 처</u>	제1조(목적) <u>「행정절차</u>
리에 관한 법률」제45조와 「지	법」 제52조의2
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서	
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과 서울특	

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의 창 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여 업무혁신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신고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u>법</u>	법
<u>제25조</u> 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	제36조의3
급 기준은 시행령 <u>제14조</u> 를 따	<u>제21조의2</u>
른다. 다만 신고포상금의 최소	
지급액은 제12조의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u>.</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와 시행	③ <u>법 제36조의3 및 시</u>
<u>령 제14조</u> 에 따라 포상금을 지	<u>행령 제21조의2</u>
급하는 경우 신고인 등에게 별	
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	
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혂 개 정 아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 제1조(목적) -----법」 제159조 및 <u>「중소기업진</u> -----「지역중소기업 육 흥에 관한 법률 | 제62조의17에 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 률」 제8조----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 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 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개 아 혅 했 정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 - 치자가 사용하거나 금천구가 -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 - 런 개인・단체・법인・기관에 - 서 사용하는 경우 - 4. ~ 11. (생 략) 4. ⑥ · ⑦ (생 략) 6

4. ~ 11.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혅 했 개 정 아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구 제2조(지원대상자)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복지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삭 제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4.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 연금수급자 및 노인시설이용 자

- 5. <u>「한부모가족 지원법」</u>에 따 른 한부모가족
- 6. 7. (생략)
- 8. <u>「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u>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이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저소득자
- 9. <u>「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u> 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 소득 참전유공자

연금	수급자	및	「노인복	-지
법」이	에 따른	노인	복지시설	0]
용자				

- 5. <u>「한부모가족지원법」</u>-----
- 6. · 7. (현행과 같음)
-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 

   ----- 

   -----
- 9.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u> 설립에 관한 법률」-----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현행개 정 안제15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구제15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청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br/>법률」 제36조 등의 규정에 따<br/>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br/>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br/>때에는 문화원장에 대하여 보고<br/>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프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

장에서 장부 ·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 문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길	(음)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개 정 안 혂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 제1조(목적) -----시 금천구 보건소에서 시설을 이용한 사람, 검사를 의뢰한 사 람 또는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 부터 「지역보건법」 제25조에 ---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진단 규칙 : 제5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생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현행

략)

-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 | ② ----- 수수료(「식품 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 1. ~ 6. (생략)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제2조 관련)

과 같음)

-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1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 ---.
- 1. ~ 6. (현행과 같음)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제2조 관련)

구 분 종 목 금 액 비고

1.	다.	1통	3,000원	건강진단결과서와	1.	다.	1통	3,000원	<u>1) 「식품위생</u>
건강진단	식품위생			건강진단서를	건강진단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결과서	분야종사자			동시에 발급할	결과서	분야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및	건강진단			경우 수수료는	및	건강진단			제5조에 따른
진단서,	결과서			'다' 항에 '마' 항을	진단서,	결과서			건강진단 수수료를
제증명	또는			더한 수수료액으로	제증명	또는			포함한다.
	건강진단서			<u>한다.</u>		건강진단서			2) 건강진단
									결과서와_
									<u>건강진단서를</u>
									동시에 발급할
									경우 수수료는
									<u>'다' 항에 '마' 항을</u>
									더한 수수료액으로
									<u>한다.</u>

##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항	2 <u>법 제2조제2호</u>
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	제9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청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	

####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혀 했 개 정 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다)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2.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 임원이 될 수 없다. 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 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 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

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제25조(임원후보의 추천) ① ~ 제25조(임원후보의 추천) ①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추천된 후보가 (4)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 법 제60조----라 한다) 제6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 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 를 재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하여 야 한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요인 없음

####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예산과 의회법제팀 박민지
연 락 처	2627 - 1110

# 관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 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 · 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 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 · 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 · 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 ·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시 · 도유산의 지정 · 등록 · 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 · 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 · 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